

공급업체의 행동 수칙

서문

Webasto SE와 그 자회사, 즉, Webasto SE(Webasto)가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소유한(주식 보유량 50 % 이상) 기관은 글로벌 사업 활동에서 진실성, 윤리적 행동 및 준법을 약속합니다. Webasto 내부 행동 수칙(COC)은 법을 준수하고, 안전하며, 예의를 갖추고, 환경적으로 책임을 보이는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확립합니다.

Webasto에 서비스 및/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모든 계약상의 파트너(공급업체)는 당사의 성공에 필수적이고, 파트너의 행동은 Webasto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Webasto는 파트너와의 지속 가능한 협업과 공급업체와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의존합니다. Webasto는 당사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공급업체와만 파트너 관계를 맺고,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개발 및 공급업체 및 하위 공급업체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Webasto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Webasto는 Webasto 공급업체 대상의 본 공급업체 행동 수칙(SCOC)에서 명시하는 모든 규정을 공급업체가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SCOC는 Webasto가 각 공급업체가 따르기를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합니다. SCOC는 이미 선정된 공급업체 목록뿐 아니라 새로운 공급업체 선택에 중요한 윤리, 환경 및 사회적 자격 기준과 같은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COC를 근간으로 합니다. Webasto는 공급업체와 공급업체 직원, 하청업체 및 하위 공급업체가 본 SCOC 요건이 그 공급망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Webasto가 제삼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공급업체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는 환경, 노동 관례, 정당한 사업 관례 및 지속 가능한 조달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또한 위험 식별 및 감사 현장 선정에도 활용합니다. 이로써 공급업체는 관련 평가에 동의합니다.

본 SCOC는 그 기원에서 적용되는 현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조항이 대체되었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계약은 계약 조건이 적용되지만, 본 SCOC와 임의의 모든 계약 조건 간 충돌이 있을 경우, 계약 조건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한 본 SCOC에서 정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Webasto는 본 SCOC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실천하는 공급업체와 관계를 확립, 유지하기를 원하고, Webasto에서 공급업체가 SCOC의 섹션 또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계약 또는 협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Webasto의 탁월한 평판은 사업의 진실성에 의존하므로, 당사 공급업체로써 SCOC를 숙지하고, 일상의 업무에서 이를 고려할 것을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목차

| | | |
|------|--|----|
| 1. | 사회적 원칙 | 3 |
| 1.1 | 인권 | 3 |
| 1.2 | 단체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 3 |
| 1.3 | 강제 또는 강요 노동 금지 | 3 |
| 1.4 | 아동 노동 금지 | 4 |
| 1.5 | 노동 시간 및 보상 | 4 |
| 1.6 | 차별 금지, 괴롭힘 금지 | 4 |
| 1.7 | 다양성, 공평 및 포괄 | 5 |
| 1.8 | 직업 건강 및 안전 | 5 |
| 1.9 | 공공 및 사설 보안 단체 배치 | 6 |
| 1.10 | 토지, 용수 및 삼림 보호, 불법 강제 철거 금지, 소수집단 및 토착민 존중 | 6 |
| 1.11 | 인권 옹호자 보호 | 6 |
| 2. | 환경적 원칙 | 7 |
| 2.1 | 환경적 보호, 에너지 감소 및 천연자원 보호 | 7 |
| 2.2 | 친환경 자재, 자원의 보존, 재사용 및 재활용 | 7 |
| 2.3 | 제한 물질 및 CO ² 배출량 | 8 |
| 2.4 | 자재 항목화 | 8 |
| 2.5 | 분쟁 광물 | 8 |
| 2.6 | 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용수 보전 | 9 |
| 2.7 | 유해 물질 및 폐기 | 9 |
| 3. | 사업 윤리 원칙 | 9 |
| 3.1 | 부정부패 방지, 뇌물수수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 | 9 |
| 3.2 | 반경쟁 행위 | 9 |
| 3.3 | 기밀성 | 10 |
| 3.4 |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 10 |
| 3.5 | 인공 지능 | 10 |
| 3.6 | 제재 | 10 |
| 4. | 일반 원칙 | 10 |
| 5. | 보고 및 조치 | 10 |
| 6. | 감사 | 11 |
| 7. | 상업적 플로우 다운 | 11 |

1. 사회적 원칙

공급업체는 자신의 기업 및 공급망 내에서 모든 사업 거래에서 본 SCOC의 다음 사회적 원칙 조항의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가치 사슬에서 잠재적으로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Webasto를 위해 제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 내 인권 실사를 위한 절차(예: 인권 실사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적절한 실사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국내 실사법, 예를 들어 공급망에서의 기업 실사 의무에 관한 독일법(SCDDA)(2021년 7월 16일) 및 사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침 원칙(이하 UN 지침 원칙)과 더불어 관련 OECD 지침 및 원칙은 이 점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언급한 실사법에 따라, 공급업체는 회사의 규모와 매출액, 제품 또는 서비스 유형 및 원산지 및 그에 포함된 원자재, 특히나 관련 위험에 맞추어 본 방안의 적절성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1.1 인권

공급업체는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한 모든 사업 경영에서 인권 존중을 약속합니다. 공급업체는 기본 인권 침해와 관련한 공도 상황 또는 결탁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급업체는 전체 공급망에서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 이행을 약속합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SCDDA 및 UN 지침 원칙, 관련 OECD 지침 및 원칙과 더불어 UN 세계 인권 선언(1948년)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2 단체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공급업체는 관련 지역 법률 준수에서 모든 직원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노조를 형성하고 가입하며 노조의 독립성과 다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단체 교섭권을 홍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반노조 차별 형태를 삼갈 뿐 아니라 노조 구성원과 리더를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급업체는 규칙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특별히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규칙).

- ILO 단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제87호)
- ILO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협약(1949년)(제98호)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1966년 12월 19일)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1966년 12월 19일)
- ILO 노동자 대표자 협약(1971년)(제135호)

공급업체는 본 규칙에서 발생하는 관련 권리에 대해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규칙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제약 없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관리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본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지 않는다면, 단체 교섭권에 대한 명확한 규칙 및 뼈대가 되는 조건을 확립하거나, 대안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규칙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1.3 강제 또는 강요 노동 금지

공급업체는 근로 환경에서 강제, 담보 또는 연기 계약 노동, 비자발 또는 착취적 죄수 노동, 노예제, 노예제와 같은 관행, 노예 상태 또는 지배 또는 억압의 기타 형태를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로는 극도의 경제적 또는 성적 착취, 수치 또는 인신매매 등이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작업 시설에서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종류 또는 형태의 비합리적인 제약을 가하면 안 됩니다. 각 근로자는 당사자 간에 모국어 또는 다른 선택 언어로 합의된 필수 채용 조건 기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임금 또는 비용을 보류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해 근로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의 의지에 반해 신원 문서를 보류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원의 이동을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다음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ILO 강제 노동 협약(1930년)(제29호)
- ILO 강제 노동 폐지 협약(1957년)(제105호)
- ILO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협약(1999년)(제182호)
- 2014년 강제 노동 협약 ILO 의정서(1930년)

공급업체는 채용, 승진 및 해고 절차 이행을 정한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노동 및 채용 관례가 회사 자체 내부와 채용 대행사, 리크루터와 같은 제삼자와 함께 어떻게 감독하고,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근로 조건과 채용 계약은 명확하게 서면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1.4 아동 노동 금지

공급업체는 회사 내부와 공급망 내 공급업체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 노동은 용납할 수 없음을 약속합니다. 공급업체는 전 세계 아동 노동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의무 교육을 마쳐야 하는 나이 이하, 국가 내 채용 최소 나이 이하 또는 15세 이하 중 더 높은 나이를 아동으로 간주합니다. 채용 법적 최소 나이 이상이지만 18세 이하는 야간 근무 및 야근 등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이에 국한되지 않지만, 이 목적을 위해, 그리고 다음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직원 나이 정보와 신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ILO 최소 연령 협약(1973년)(제138호),
- UN 아동 권리 협약(1989년)
- ILO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협약(1999년)(제182호)

개별 방침에서 공급업체는 자체 운영 및 공급망 내에서 앞서 언급한 규칙에 따라 아동 노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본 요구사항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 및 합의에 통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자신의 운영에 아동 노동이 있음을 식별하면, 공급업체는 작업에서 아동을 제외할 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적절한 교정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1.5 노동 시간 및 보상

공급업체는 지역 법률 또는 산업 기준 중 더 높은 보호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 노동 시간이 최대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최소 휴식 및 휴가 기간을 보장하는 절차 실행을 약속합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관련 임금 및 혜택 법, 야근 시간 및 합법적인 의무 혜택을 준수하는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직원은 수행한 일에 대한 올바른 보상을 확인하기 위해 각 임금 기간에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월급 명세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ILO 노동 시간(산업) 협약(1919년)(제1호)
- ILO 노동 시간(상업 및 사무실) 협약, 1930 (제30호)
- ILO 동등 보수 협약(1951년)(제100호)
- ILO 시간제 노동 협약(1994년)(제175호)

임금과 복지는 상근직 임금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생활 기준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과의 협상 또는 대안의 참여 형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업계에서 주도적으로 법적 최소 임금을 초과하는 임금과 복지를 지원해야 합니다.

1.6 차별 금지, 괴롭힘 금지

공급업체는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면서 인종, 피부색, 인종 기원, 성별, 성 정체성, 종교 또는 신념, 나이, 장애, 임신, 육아, 혼인 상태, 정치적 소속 및 동성애를 바탕으로 모든 차별 및/또는 괴롭힘을 구축 또는 신봉 또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공정한 가치의 일에 대한 공정한 급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작업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 경우 여성의 권리,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관련법을 따라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적절한 규정을 채택하고, 모든 직원과 명확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차별과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즉각 종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특히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ILO 동등 보수 협약(1951년)(제100호)
- ILO 차별(채용 및 직업) 협약(1958년)(제111호)
-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공급업체는 관리자와 직원이 차별과 괴롭힘, 특히 인사 결정에 있어서 이를 인식하고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정기적으로 차별과 괴롭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위반 보고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예: 교육의 형태로).

1.7 다양성, 공평 및 포괄

공급업체는 모든 직원의 차이점이나 유사성 없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에게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포괄성, 불법 차별에서 자유로운 포괄성, 괴롭힘, 관련 법에서 정한 비하에 대해 공평, 공정 및 존중을 촉진하는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더 나아가, 공급업체는 수행 및 능력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모든 조치, 의무 및 참여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다음의 규칙을 준수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LO 토착민 및 부족민 협약(1989년)(제169호)
- UN 토착민 및 부족민 권리 협약(2007년)
- 개인정보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의 국제 행동 수칙(2010년)

1.8 직업 건강 및 안전

공급업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이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직원 유지와 사기뿐 아니라 생산 일관성도 유지한다는 개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는 노동 및 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모든 수준의 책임에 있는 직원이 포함되는 효과적인 직업적 건강 및 안전 방침을 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식별의 수단으로 직원이 최소한으로 건강 및 안전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는 작업에서 공인받은 직업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예: ISO 45001 또는 OHSAS 18001에 따라)을 실행하고 운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소음 검사, 평가 및 제어, 사전 유지보수 및 안전 작업 절차부터 지속적인 안전 교육까지 여기 포함되고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요청 시, 상응하는 인증서를 제출함으로써 Webasto에 본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잠재적 비상 상황의 영향을 식별, 평가 및 최소화하고 각각 교육 및 훈련 등 적절한 비상 준비 계획 실행을 착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급업체는 특별히 직업적 부상, 질병, 산업 위생, 기계 산업 보호, 위생 시설, 식품 및 주택에 관련,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은 지역 법률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ILO 직업 안전 및 건강 협약(1981년)(제155호)
- ILO 직업 안전 및 건강 협약 촉진 체제(2006년)(제187호)

공급업체는 일에 관련된 사고나 질병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업 건강 및 안전용 방침과 지침을 보유하고

직업적 사고 및 질병을 궁극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사전 접근법을 촉진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 검사를 수행하고, 사고율, 사망자 수 및 낭비한 날수에 대한 원하는 타겟을 설정하고 연 기반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의 모든 건강 및 안전 교육을 문서화하고 직원이 건강 서비스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에는 현장 진료소 또는 외부 의료 제공자의 추천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9 공공 및 사설 보안 단체 배치

공급업체가 자체 보안 단체를 사용해 운영을 보호하거나 사설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단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인권을 무시하는 사설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하거나 공공 보안 단체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보안 단체가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안 및 인권에 자발적 원칙을 촉진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이를 위해 인권 위반에 대한 업체의 가능한 연관을 배제할 목적으로 배치될 보안 단체의 신원 조사와 같은 적절한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업체 직원의 모든 채용된 보안 직원에 인권 준법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협력의 맥락에서 사설 또는 공공 보안 단체에 의해 야기된 반 인권 영향을 처리해야 하고 재발생을 피하기 위해 영향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대변인과 협력해야 합니다.

1.10 토지, 용수 및 삼림 보호, 불법 강제 철거 금지, 소수집단 및 토착민 존중

공급업체는 토지, 삼림 및 용수권을 존중하고 불법으로 철거 또는 강제 철거를 시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 삼림 및/또는 용수를 취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소수민족, 지역 커뮤니티 및 토착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동의하고, 특히 그들이 현장에서 공급업체의 운영에 영향을 받고 사업 활동이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소수집단, 지역 커뮤니티 및/또는 토착민의 건강, 안전 및 생활 터전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소수집단, 지역 커뮤니티 및/또는 토착민을 불법으로 재정착을 강요하고 그들의 비자발적 재정착에 불법으로 기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독립 국가의 토착민 및 부족민에 관한 ILO 협약 제169호에 규정된 활동에서 부족민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부족민의 권리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유산, 그리고 그들의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리 및 기타 자연 리소스 등 토지, 삼림 및/또는 용수와 그들의 연결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특히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토착민 및 부족민 협약(1989년)(제169호).

재정착이 필요한 경우, 모든 반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전 생활 조건을 복원할 목적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망 내 저장되는 토지, 삼림 및/또는 용수에 대한 무관용 방침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과거 유용한 토지, 삼림 및/또는 용수에 교정 조치도 구축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모든 활동과 소통이 포괄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지역 커뮤니티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모든 상호작용을 문서화해야 하며, 특히 소수집단 및 토착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11 인권 옹호자 보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 창출 과정과 관련해 인권 옹호자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인권 옹호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협박, 위협, 차별, 괴롭힘, 명예훼손 및 범죄화에

반대해야 하며 하위 공급업체에도 동일한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2. 환경적 원칙

공급업체는 본 SCOC에서 정한 것처럼 환경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급업체는 체계적 접근법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여기에는 생물 다양성 고려, 토지 사용 최소화, 용수 품질 보호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삼림 벌채 삼가, 용수 소비 최소화와 용수 관리 개선 등이 여기 포함되고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품 자재 공급업체는 환경적 관리 시스템과 시스템을 구축해 자재, 물품 및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에너지 수행 개선 및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능하고 실현가능하면, 공급업체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선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석 에너지원과 같은 비재생 에너지원에서 태양, 풍력, 조력 지열 및/또는 바이오매스에서 오는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여기 속합니다. 공급업체는 정기적으로 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기회, 위험, 목표 및 타깃이 최신 상태이며 직원이 자신감 있게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1 환경적 보호, 에너지 감소 및 천연자원 보호

Webasto는 최고 수준의 상품 생산의 통합적 부분으로 환경적 책임을 존중하고 이행합니다. 따라서, Webasto는 공급업체가 자신의 사업 운영에서 같은 수준의 철저한 검토와 책임감을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환경적 보호, 책임 있는 환경적 에너지 감소, 천연자원 및 모든 가능한 관련 부작용에 관련한 사업 운영 현장, 시설 관리를 실행, 유지보수 및 계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임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조립식 제품뿐 아니라 생산 공정과 그 생산에 쓰이는 모든 원료 및 물질이 관련 환경 규정과 그 규정을 넘어서거나 보완하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자신들의 생산 및 공급망에 환경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만약 이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예방책이 되는 원칙에 따라 환경적 위험 요소 및 환경적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관련 보고 절차를 따를 뿐 아니라 관련 지역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환경적 허용, 승인, 공인서 및 등록을 획득, 유지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2 친환경 자재, 자원의 보존, 재사용 및 재활용

Webasto는 공급업체가 에너지, 원자재 및 용수를 책임감 있게 절약해서 사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용수 절약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 잠재적인 용수 회수 및 방출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Webasto는 특별히 원자재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공급업체가 완료된 공급망 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Webasto의 노력을 지원하기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특히 환경친화적인

- 재료 대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해야 하며, 예를 들어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 생산된 2차 원료 또는 재료를 제안하고
- 에너지 및 물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포함해 환경 구획으로의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더욱이 Webasto는 공급업체가 환경 영향에 투명성을 조성하는 데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요청 시, Webasto는 온실가스 배출 및 공급망뿐 아니라 작동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세부 사항은 2.3 참조).

Webasto가 순환 경제로 전환을 지원하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Webasto는 2차 원료, 재활용이 용이한 원료, 재사용된 원료, 서브어셈블리 및 자연에서 온 원료 효율성 및 폐회로 재활용 계획의 사용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공급업체는 잠재적 조치와 개선을 제안해 이 영역에서 Webasto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3 제한 물질 및 CO² 배출량

공급업체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협약(아래 정의와 같이) 및 미나마타병 협약(아래 정의와 같이)(**제한 물질**)에 따라 및 파리 동의(아래 정의와 같이)에 따라 이산화탄소(CO²) 배출에 따라 방침을 실행해 제한 물질 사용 및/또는 배출을 감소시키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은 및/또는 수은 화합물, 유해 폐기물 등이 여기 속하며 GHG 프로토콜(아래 정의와 같이)에 따라 CO²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합니다. Webasto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는 단체 수준 및 제품 수준에서 CO² 발자국을 보고해야 하며, 예를 들면, 그 제품의 CO² 발자국이 여기 속합니다. 더 나아가, Webasto의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는 Webasto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사용 가능 원자재 사용을 공개해야 하며, 예를 들면 강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유리와 같은 배출 강도가 높은 자재가 여기 속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모든 법률 요구사항 및 극한값을 준수해 각 사례에서 모든 유해한 방출 및/또는 제한 물질을 사용, 생산, 수집, 보관, 노출, 수출 또는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중기적으로 CO² 중립 제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구심을 방지하고 Webasto에 관련해서 공급업체는 위의 CO² 배출량 및 탄소 발자국 및 제한 물질의 사용 및/또는 배출 감소를 충족하기 위해, 실제 CO² 배출량 또는 제한 물질의 양/값과 상쇄하기 위해 탄소/제한 물질 제거 및/또는 탄소/제한 물질 감소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공급업체는 특별히 다음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 바젤 협약(1989년 3월 22일)
- 세계 지속 가능 개발 기업 협의회(1998년)(WBCSD)와 세계 자원 연구소(WRI)가 공동으로 소집한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프로토콜)
-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관련 스톡홀름 협약(2001년)(지속 유기 오염 물질 협약)
- UN 미나마타 수은 협약(2013년)(미나마타 협약)
- UN 파리 협정(2015년)(파리 협정)

2.4 자재 항목화

공급업체는 공급받은 부품/구성품의 완전한 물질 항목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안전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해 우려되는 물질의 금지, 사용 제한 또는 추적 가능성에 대한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관련 보고 구조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5 분쟁 광물

공급업체가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채취되거나 고위험 지역을 거치는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및/또는 공급업체가 그러한 원자재를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 형식 분쟁 영역에서 사용되는 광물의 원산지 방침을 실행 및 유지해야 하며, 특히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이 여기 속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투명성 규정 중 본 방침은 분쟁 광물의 관련 강행 법률을 특별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공급망과 함께 불리 효과의 실제 및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공급망 실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조직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우선 순위화하며 대항조치를 시작하는 방법은 관련 방침에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분쟁 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석, 탄탈 및 텅스텐, 그 광석 및 금 수입국에 대한 EU 규정 No. 2017/821.

공급업체가 3TG3(주석, 탄탈, 텅스텐 및 금)을 공급하는 업체이거나, 이러한 원자재를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망 내에서 모든 용광로와 정채기가 OECD-준법 실사 처리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별, 공개 및 평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최소 책임감 있는 광물 보증 과정(RMAP)과 같은 구축된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생산 시작 시, 관련 자재가 책임감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RMI)의 RMAP의 요구사항(상태: 적합)을 만족시키는 정채기와 용광로에서 독립적으로 나오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증거로, 관련 공급업체는 분쟁 광물 보고 템플릿(CMRT)을 늦어도 3월 1일까지 매년 제공합니다. 사용된 용광로 또는 정채기가 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Webasto는 공급업체에 Webasto와 장기간 일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비 RMAP 준법 정쇄기 및 용광로를 제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Webasto는 공급업체에 희토, 백금, 팔라듐,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흑연, 리튬, 코발트, 크롬, 운모, 3TG, 강철, 유리, 플라스틱, 가죽 및 천연고무와 같은 특정 및 중요 원자재 사용에 관련된 책임감 있는 광물 제휴 이니셔티브(IRMA) 증명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2.6 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용수 보전

공급업체는 자신의 사업 활동이 천연 생태계의 불법 전환, 생물 다양성 및 용수, 토양 및 공기 품질 해치를 통해 혜택을 얻기 위해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삼림 벌채에도 적용되며 이는 자연림을 주로 농지나 기타 토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공급망에 적절한 실사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제품 가치망에 자연림 전환 위험 또는 기타 천연 생태계 또는 생물 다양성, 용수, 토양 및 공기 품질에 관련된 위험이 존재한다면, 공급업체는 천연 및 문화적 가치 보호 등 이런 천연 생태계의 장기간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실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표층/토양, 용수 및/또는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주입 및 토양 손상의 환경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적절한 조직적 및 기술적 보호 장치를 취해 제품 조달 및 제조 과정이 민물 및/또는 해수 품질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용수 소비를 최소화하고 용수 관리를 개선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7 유해 물질 및 폐기

건물 내 보관 또는 처리 또는 생산 중 생성되는 화학 및 기타 유해 물질을 처리할 때, 공급업체는 직원 지침뿐 아니라 적절한 식별 및 라벨링 작업을 하고 적절한 보관 장소 및 처리 과정 조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기 및 토양 오염, 용수 오염 및 기타 유해한 영향 등으로 인한 위험은 기술적으로 최대한 방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현장에서 생성되는 유해한 폐기물을 조심히 분류, 적절하게 수집, 보관, 유지 및 폐기하기 위해 적절한 폐기 관리 시스템과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어떤 폐기물도 폐기 경로 중 불법으로 폐기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 사업 윤리 원칙

공급업체는 모든 자신의 사업 거래와 함께 본 SCOC의 다음 사업 윤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1 부정부패 방지, 뇌물수수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

공급업체는 자신의 사업 상호작용 및 거래에서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특히 공급업체는 모든 해당하는 부정부패 법률을 준수하고, 특별히 미국의 해외 부패 관행법과 영국의 뇌물법이 여기 속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공급업체든 그 자회사든 특히 뇌물 수수, 부패, 착취, 횡령 및 자금 세탁에 관련된 형사 책임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신과 그 자회사가 과도하거나 모든 종류의 뇌물 또는 부적합한 혜택, 이것이 약속, 제공, 승인, 공급 또는 수락, 제삼자를 통한 직접 또는 간접인 방법을 통해서 여부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또는 부적절한 혜택을 얻는 기타 수단에 관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원자재 공급업체는 채취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의 원칙에 따라 결재를 공개하도록 약속해야 합니다.

3.2 반경쟁 행위

공급업체는 공정한 사업, 광고 및 경쟁에 대한 모든 관련 기준을 지지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위조 부품의 기여 또는 이익을 삼가고, 제품 적합성 및 제품 안전, 반독점,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에 관한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3.3 기밀성

공급업체는 관련 법적 요구에 따라 Webasto에 의해 공개되는 모든 거래 비밀과 기타 법률로 보호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Webasto와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또는 Webasto와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비공개 조항에 따라 공급업체는 모든 기타 사업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재정적 책임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4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공급업체는 관련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법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점적으로 Webasto와 사업 관계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모든 국내 및 국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는 등록 가능한 재산권(예: 특허, 상표권, 디자인), 도메인, 저작권 및 공정 거래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지식재산권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필요한 권리를 갖고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5 인공 지능

인공 지능을 개발 및/또는 사용하는 공급업체(특히 머신 러닝 및 딥 러닝)는 인공 지능 활용에서 안전 및 신뢰성뿐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용 및 취급, 설명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급업체는 사람이 개발의 통제자로 남고 기회와 위험이 동일하게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접근법을 따릅니다.

3.6 제재

공급업체는 모든 관련 국내 및 국제 제재 및 거래 금수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공급업체는 제재 위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일반 원칙

공급업체는 모든 관련 법률, 규정, Webasto와 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공급업체 사업 영역 및/또는 공급망의 운영 및 생산에 관련된 본 SCOC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이 여기에 정한 대로 내부고발 시스템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해 모든 원칙 위반을 익명으로 알리고 보복에서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5. 보고 및 조치

공급업체가 그 사업 영역 및/또는 공급망에서 본 SCOC 위반 또는 위반 위험을 식별했다면 즉시 적절한 처리 방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된 위반 또는 이와 관련된 공식 조사의 경우, 공급업체는 다음 방법을 통해 Webasto에 알려야 합니다.

- Webasto 내부고발 핫라인: <https://www.bkms-system.com/webasto>

- 이메일: compliance@webasto.com

Webasto의 요청으로 공급업체는 본 SCOC에서 언급한 규칙, 법률 및 원칙에 결과로 Webasto가 의무를 시행하기 위한 명령에 Webasto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Webasto가 제공하 자가 공개 질문표에 답하고, 공급업체는 알고 있는 한 최대한으로 완전하고 진실하게 답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사업 영역 또는 공급업체 공급망 내 본 SCOC에 나열된 의무 위반 범위가 가까운 장래 종료될 수 없으면, Webasto는 특정 시간 내 위반을 끝내거나 본 심각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조치 계획을 개발하고 설계된 수정 조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급업체 및/또는 관련 제삼자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공급업체는 최대 능력껏 Webasto를 지원할 것입니다.

Webasto의 요청으로 공급업체는 본 SCOC에서 정의한 대로 Webasto 기준 및 기대치에 대한 훈련 및 더 나아가 교육에 참석합니다.

공급업체가 본 SCOC를 위반하고 정당한 시기 내 위반을 바로잡지 않는 경우 Webasto는 공급업체와 공급 관계를 정지 또는 종료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6. 감사

Webasto는 합리적인 사전 알림 제공 후 전 세계 공급업체 장소에서 본 SCOC 조항에 따른 준수를 감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감사는 Webasto 재량에 따라 현장 또는 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관련 지역의 일반 영업시간에 이루어집니다. Webasto는 합리적으로 최대한 공급업체의 사업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Webasto는 또한 감사자와 사전에 Webasto에게만 해당 감사에 대한 SCOC 관련 결과를 알릴 것이라는 사전 기밀 계약을 비밀리에 동의했다면 해당 독립적 감사자에 의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해당 감사는 장소당 12개월마다 한 번씩, 공급업체당 12개월마다 4곳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인 관련 감사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적합한 것은 Webasto의 합리적인 재량 결정을 따릅니다. 본 SCOC 조항의 심각한 일탈이 감사 중 식별되지 않는 한, 감사 비용은 Webasto가 부담합니다.

7. 상업적 플로우 다운

공급업체는 본 SCOC에 따라 추정되는 모든 의무를 하청업체, 부 공급업체 및 기타 보조업체에 부과하고 Webasto가 공급업체 자체에 대한 권리와 최소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본 SCOC에 서명함으로써 공급업체는 SCOC 조항을 준수하고 SCOC와 같은 수준으로 관련 기업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방침을 실행하고 유지할 것을 공식화합니다.

날짜/장소: _____

성명/기능: _____

서명: _____